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124
----------	-----

제안년월일 : 2018년 9월 6일

제안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1. 주 문

-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도시철도 운영 적자의 주된 요인이 되어 왔고, 국가의 지원 없이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음
- 국회예산처는 2017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용 추계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도시철도운영자의 무임수송 비용을 4조 642억 87백만원으로 산출하였으며, 이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무임수송 비용에 비해 두 배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임
- 통계청은 서울시 인구에서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2018년 6월말 기준 13.8%에서 2020년 15.4%, 2025년 19.5%, 2030년

23.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이 도시철도 운송기관이 무임수송 운영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결국 서울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임

- 이에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공공서비스 시행에 따른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해 내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나. 기타사항: 없음

4. 이 송 처

가. 국 회 : 국회의장

나. 정 부 :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

서울시는 1974년 8월 지하철 1호선 개통이후 2017년 기준 지하철 1~9호선 및 우이신설선 건설에 이르기까지 영업연장 342.6km, 지하철 역 320개역, 전동차 3,755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서울시 도시철도는 일평균 784만명을 수송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도시철도 운영 적자의 주된 요인이 되어 왔고, 국가의 지원 없이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서울시 도시철도 뿐만 아니라 전국 도시철도에 해당되는 사안이며, 실제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서울시메트로9호선운영(주), 부산-김해경전철(주), 의정부경전철(주), 용인경량전철(주) 등 도시철도운영자의 무임수송 비용은 2조 1,879억 95백만원에 달했습니다.

국회예산처는 2017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도시철도운영자의 무임수송 비용을 4조 642억 87백만원으로 산출하였으며, 이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무임수송 비용에 비해 두 배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통계청은 서울시 인구에서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2018년 6월말 기준 13.8%에서 2020년 15.4%, 2025년 19.5%, 2030년 23.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이 도시철도 운송기관이 무임수송 운영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결국 서울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공공서비스 시행에 따른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해 내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8. 9.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